KLPGA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2021.09.03.(금)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협회 정관 제33조에 의하여 설치하며 상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 회원의 기강확립과 자질향상, 사기앙양을 위하여 신상필벌에 관한 각종 기준을 선정하여 시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1. 본 규정은 협회에 등록된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특별회원)
2. 회원과의 특수관계자(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캐디, 기타 학연・지연・사제지간)
3. 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하는 아마추어와 그 특수관계자

제4조(구성)

1. 위원회의 정원은 7명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 내부위원장(회원) 1명, 외부위원장(외부인사) 1명
   나. 위원 : 내부위원(회원) 3명, 외부위원(외부인사) 2명
2.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구성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궐위나 사임으로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 위원 중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직을 대신할 수 있다.
6. 위원회 구성원은 KLPGA 대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임원 등) 또는 협회 관계사(KLPGA/T) 소속의 신분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위원회 구성원 중 상근에 준하는 신분 또는 직위자는 제외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3.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1. 상과 관련한 사안은 내부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벌과 관련한 사안은 외부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단, 상 및 벌과 관련한 사안이 동시에 논의될 경우 내외부 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한다.
2. 위원장 또는 위원이 본 회의의 심의 대상이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을 시 에는 심의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의 의결권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2 장 표 창

제9조(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명예의 전당.
2. 대상(올해의 선수상).
3. 상금왕.
4. 다승왕.
5. 최저타수상.
6. 올해의 신인상.
7. 위너스 클럽상.
8. 특별상
9. 해외특별상
10. 공로상.
    가. 특별공로상
    나. 투어공로상
    다. 공로상
11. 기타표창.(감사패, 인기상 등)

제10조(선정기준)

1.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 나, 다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10년 이상의 투어 경력.

나. 만 40세 이상(연령 제한 관련 건은 2018년부터 적용)

다. 메이저대회 우승, 최저타수상 수상, 대상 수상 중 1개 이상 수상

라. 명예의 전당 포인트 100점 이상 획득자

1) 대회 포인트(KLPGA, USLPGA, JLPGA)
   가) 메이저대회 우승 : 4 포인트
   나) 일반대회 우승 : 2포인트
2) 수상 포인트(KLPGA, USLPGA, JLPGA)
   가) 대상(올해의 선수상) : 4포인트
   나) 최저타수상, 신인상 : 2포인트
   다) 상금왕(국내), 다승왕(국내) : 1포인트
   라) 1년내에 대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중 3개 이상 동시 수상(국내) : 2포인트 (단, 다)라)는 신규 규정으로 2016년부터 적용)
3) 대회 참가 포인트(USLPGA, JLPGA 풀시드권자) KLPGA 주관대회 시즌 3개 이상 참가시 2포인트 부여 (단, 규정 변경 전인 2004년~2015년은 1개대회 참가시 1포인트)
4) 올림픽 관련 포인트
   - 금메달 4포인트, 은메달 3포인트, 동메달 2포인트

마. 적용 내용

1) 대상(올해의 선수상), 메이저대회우승, 정규대회우승, 시즌 최저타수상 수상자는 2003년부터 역산하여 포인트를 부여하나 KLPGA 입회연도 이전의 성적은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USLPGA, JLPGA 풀 시드권자 중 KLPGA 주최, 주관대회에 참가한 자는 2004년부터

기산하여 포인트를 부여하나 KLPGA 입회연도 이전의 성적은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대상(올해의 선수상)
   가. 국내 정규대회 10위까지 기록한 선수만이 포인트 계산 대상자가 된다.
      단, 1) 대상 포인트가 동률일 경우 상금순위, 평균타수 순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대회는 상금 인정 대회
   나. 포인트 기준 : 별표1) 대상(올해의 선수상)포인트 기준 참조
3. 상금왕 : 당해연도 정규투어, 드림투어, 챔피언스투어(프로 아마 통합) 상금 1위자
4. 다승왕 : 상금순위 인정대회 다승자.
5. 최저타수상 : 당해연도 상금 인정대회 50% 이상 참가자 中 최저 타수 기록자.
6. 올해의 신인상
   가. 정의 : 신인상은 매년 KLPGA(정규대회)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신인상 후보 대상자에게 수여된다. KLPGA 투어 개별대회 최종 결과에 따라 신인상 포인트가 부여된다.
   나. 적용기간 : 2016시즌 참가대회를 반영하여 2017시즌부터 기준 적용
      - 2015시즌까지는 소급적용불가(2015시즌까지 단 1회라도 정규투어 유자격 참가했을 경우, 2017시즌부터 신인상 후보 불가)
   다. 대상자 선정 조건 : 정규투어 출전자격리스트 상의 모든 선수는 정규투어(상금순위 인정대회)에 최초 유자격으로 참가한 시즌에 신인상 후보 대상자가 될 자격이 있다. 단, 해당 시즌 정규투어 50%미만을 유자격으로 참가할 경우 향후 정규투어 1시즌 50% 이상을 참가할 때까지 신인상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된다.
      ※ 2020 시즌부터 실시(2020 시즌 효성 챔피언십 with SBS Golf부터 적용)
   라. 포인트 기준 : 별표) 올해의 신인상 포인트 기준 참조
7. 위너스 클럽상 : KLPGA 회원 中 KLPGA투어의 상금 인정 대회에서 1승이상 한자에 한하여 위너스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당해연도 대상시상식에서 생애 첫 승을 기록한 회원에 한하여 위너스 클럽상 시상.
8. 특별상 : 국내에서 연간 1승 이상 기록한 자.
9. 해외특별상 : 해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0. 공로상 : 국내・외에서 국가 및 협회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자.
   가. 특별공로상 : 한해에 KLPGA 투어 2개 이상 개최한 스폰서 또는 국가 및 KLPGA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나. 투어공로상 : 연속 5년 이상 대회를 개최한 스폰서 또는 KLPGA 발전에 모범을 보인 공로가 인정되는 자(5/10/15년 순으로 5년 단위시상)
   다. 공로상 : 신규대회를 개최한 스폰서 또는 KLPGA 발전에 공헌한 자
11. 기타표창 : 상기 선발기준 이외에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별도 세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절차)

1.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가. 기록/투표관련 표창 [명예의 전당, 대상(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올해의 신인상, 위너스 클럽상, 인기상, 베스트 드레서, 특별상 등] 수상자는 상벌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며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해외특별상 수상자는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나. 기록 외적인 표창 (공로상, 기타표창 등) 수상자는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표창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표창일자 기준으로 출장정지 이상의 징계가 진행 중인 표창 대상자에게는 표창을 하지 않는다.

제12조(표창시기)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

제13조(표창혜택) 기록 외적인 표창(공로상, 기타표창)을 수상한 회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1. 표창을 수상한 회원이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1항(경고) 또는 제2항(벌칙금)에 의해 징계를 받았을 경우 1회 표창에 대하여 1회 징계를 감면해 준다.
2. 표창을 수상한 회원이 출장정지 이상의 징계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반영한다.

제 3 장 징 계

제14조(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벌칙금.
3. 출장정지.
4. 자격정지.
5. 제명.

제15조(징계기준) 징계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입원치료, 해외거주, 해외대회 참가, 해외전지 훈련 등을 의미하며 사전에 미 신고 시 징계 받을 수 있다. 이하 “정당한 사유”라 칭한다.) 및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징계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경고.
   과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고로써 주의를 주도록 한다.

2. 벌칙금

구분	내용
가. 에티켓	1) 회원이 골프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골프 팬의 빈축을 하거나 협회 또는 타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벌칙금이 부과된다.)
	2) 골프장 출입 시 청바지(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제외. 단, 찢어지거나 구멍 뚫린 청바지는 제외), 트레이닝복, 과도한 노출의 의상, 슬리퍼를 착용한 경우 또는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포함) 라운드 후 만찬 및 시상식 참석시 라운드에 입은 복장을 탈의한 후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지 않은 경우. (연간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 외에 당해연도 출장 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3) 골프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연간 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나. 프로암	1) 협회의 공인을 받은 이벤트성 프로암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불참할 경우 (연간 기준으로 1회는 10만원, 2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은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구분	내용
나. 프로암	2)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에 초청받아 출전하는 회원이 프로암 대회 Tee-Off 30분전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도착 횟수에 따라 시즌 기준으로 1회는 50만원, 2회는 100만원, 3회는 1개 대회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3회째 지연 도착한 대회가 시즌 마지막 대회일 경우 1개 대회 출장정지는 다음 시즌으로 이월된다. 단,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지연 도착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칙금 또는 출장정지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개최 1주일 이전에 참가를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기준으로 1회는 30만원, 2회는 50만원, 3회는 7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4)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 라운드 시 핸드폰을 사용했을 경우 또는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연간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5)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 라운드 시 동반 팀 또는 플레이어가 프로의 무례한 행동, 불친절 등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5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6) 프로암 대회(이벤트성 프로암 대회 포함) 마지막조의 스코어 카드 접수 기준으로 30분 후에 시상식에 참석한 경우. (연간기준으로 1회 위반시는 벌칙금 20만원, 2회 위반시는 벌칙금 30만원을 부과하며, 3회 이상 위반할 시에는 위반 이후부터 2개 대회의 프로암 대회에 출전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규투어 프로암 대회 만찬 시 행사 시작 1시간 30분 이후에는 참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만찬 중 이라도 내일의 투어를 위해 자리를 떠날 수 있다.
다. 시상식	1) 조 편성표에 의거 최종라운드 진출자 중 Out-Course 막조부터 6개조(단, 드림, 점프, 챔피언스 투어는 최종라운드 진출자 전원)가 시상식에 불참한 경우 벌칙금 20만원 부과. 단, 샷건 방식일 경우 전원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연간 기준으로 3회 이상 시상식에 불참한 경우 최종 시상식에 불참한 대회 이후에 바로 개최되는 대회에 1회 참가 할 수 없으며, 3회째 불참한 대회가 연중 마지막 대회인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된다.)
라. 대회	1)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벌칙금이 부과된다.)
	2) 벙커샷 정리 및 그린 위에서 본인 디보트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연간 기준으로 1회는 10만원, 2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은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3) 경기 중 내기골프를 한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벌칙금이 부과된다.)
	4) 경기조건에 규정된 경기속도를 위반하여 대회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기분과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한다.
	5) 그린에서 퍼팅 선을 넘어 다닌 경우. (연간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구분	내용
라. 대회	6) 대회 기간 중 연습 퍼팅 그린에서 전화를 진동으로 하지 않았거나 통화 시 그린을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연습공이 4개를 초과 했거나 볼 케이스를 확실히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린에 버렸을 경우. (연간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7) 하우스캐디 배정 후 변경사항을 최소한 3일 전까지 해당 골프장 캐디 마스터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회 당일, 라운드 중 하우스 캐디를 교체한 경우. (해당선수는 하우스 캐디피를 지불하여야 하며, 2회이상 어겼을 경우 1년간 하우스 캐디 배정이 금지된다.) (연간기준으로 1회는 경고, 2회는 10만원, 3회는 2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4회는 3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8) 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각종 실기 테스트 등)의 마커 참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불참할 경우. (3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9) 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정규투어의 우승자 중 협회 회원인 자가 Defending Champion으로서 다음해 동일대회에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본인 출산/결혼 및 입원치료, 4촌 이내 친척 사망 또는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인정될 경우) 외에 불참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급받은 해당 대회 우승상금 전액(세금 및 특별회비 등의 기 공제액은 제외)을 벌칙금으로 부과한다. 단, 해외투어에서 활동 중이거나 초청선수의 경우 별도로 심사하여 결정하며 외국인선수는 제외한다.
	10) 대회 시 출입가능 대상 외 협회 지정 장소 출입 제한 협회가 지정하는 장소(라커, 티-박스, 퍼팅그린, 대회 본부 등)에 출입 가능 대상자[선수, 캐디, 대회관계자(협회 임직원, 스폰서 담당자, 진행자)]외에 출입 불가능 대상자(부모 등 선수 친인척, 감독, 코치 등)가 출입 할 경우 1회 위반 시 해당 선수에게 벌칙금 50만원, 2회 위반 시 해당 선수에게 벌칙금 100만원, 3회 위반 시 위반자에게 1년간 KLPGA 주최/주관대회 출입금지, 4회 위반 시 해당 선수에게 1개 대회 출장정지를 부과한다. (단, 시즌 마지막 대회일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된다.)
	11) KLPGA 투어에 출전하는 선수의 캐디는 KLPGA 캐디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캐디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가 부과된다.
	12) KLPGA 정규투어를 취소한 경우 가) 국내대회 - 대회 2주전 월요일까지 취소자 전액 환불 - 대회 2주전 화요일 이후~본대회 시작일까지 취소자 환불불가 나) 해외대회 - 대회 2주전 월요일까지 취소자 전액 환불 - 대회 2주전 화요일 이후 취소시 참가금 환불 불가 및 대회 현장에서 참가금을 납부하는 대회는 벌금으로 협회 납부 다)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증빙자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1회 위반-1백만원, 2회 위반-2백만원, 3회 이상 위반- 회당 3백만원) 라) KLPGA 정규투어/드림투어 참가를 위해 정규투어/드림투어 취소 시 벌금 면제 ※ 단, 증빙자료는 온라인 취소 신청 및 대회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해야함

구분	내용
라. 대회	13) KLPGA 드림/점프/챔피언스/시드전/선발전을 취소한 경우 가) 정규투어를 제외한 모든 대회 참가자 (1) 대회 개최 D-2일까지 취소자 전액 환불 (2) 대회 개최 D-1일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3) 참가자 발표 시 대기자 전원 환불 나) 가).(1).~(2). 해당자는 반드시 온라인 취소신청 및 대회 종료 후 3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가).(2) 해당자는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증빙자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부과. 위반에 대한 누적은 투어에 관계없이 개인별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처음 위반한 당해연도 말까지 적용된다. - 1회 위반 시 : 100만 원 - 2회 위반 시 : 200만 원 - 3회 이상 위반 시 : 회당 300만 원 ※ 아마추어 대회는 제외(회장배, 삼천리 대회 등)
	14) 선수의 중도기권 1회 기권 시 부터 정당한 사유로 기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중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증빙서류 제출 : 사유서 1부, 진단서 1부 ※ 제출기한 : 기권일 기준 7일 이내 ※ 아마추어 대회는 제외(회장배, 삼천리 대회 등)
	15) 정규투어 동일대회 2년 연속 불참 제한 가) 규정적용 대상자 : 해당대회 참가자격자가 2년 연속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나) 대상대회 : 한국여자오픈을 제외한 KLPGA가 주관하는 정규투어 전체 (해외개최 대회 포함) 다) 벌칙금 : 1,000만원 라) 기타 예외사항 (1) 당해연도 해당대회가 차기연도에 미 개최하고, 차차기연도에 대회 개최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해외투어 유자격 선수, 협회 비회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투어 유자격 선수 - 해외투어 시드권자 및 시드순위자로 대회 유자격으로 출전한 자 - 해외투어의 해당대회 대회요강 상 명기된 KLPGA 자격 기준 (KLPGA 상금순위 순 등)을 출전한 자 마) 실시시기 : 2018년도 시즌부터 실시(규정 적용은 2017년도 시즌부터)
마. 행사	1) 협회 공식행사에 불참하는 경우. 단,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사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규투어 상반기(7월말 기준) 상금랭킹 1위자 및 하반기(12월말 기준) 상금랭킹 1위자가 유소년 대상 1일 교사 형태의 골프 클리닉 행사에 각 반기별 1회 의무봉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각 반기별 기준으로 벌칙금 100만원이 부과되며, 상금랭킹 1위자가 상, 하반기 동일인의 경우 모두 불참 시 하반기의 벌칙금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3) 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선골프대회 참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불참할 경우. (100만원의 벌칙금과 당해연도 자선골프대회 개최 주 이후에 열리는 1개 대회에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바. 교육	1) 시드권이 있는 자 중에서 대회 참가 신청을 한 선수가 투어프로교육에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불참한 경우. (미참석 시에는 5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사. 기타	1) 연간 경고 2회를 받은 경우 (연간 기준으로 경고 2회 시 10만원, 3회 시 20만원의 벌칙금 이외에 당해 연도 출장정지가 병행하여 부과된다.)
	2)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로 판단된 경우

3. 출장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징계처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응할 경우 별도의 심의에 의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구분	내용
가. 프로암	1) KL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 의무적으로 초청된 회원은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프로암 불참할 경우, 상벌분과위원회 회부/심의절차 없이 해당 본 대회 출전을 금한다.
나. 대회	1) 동반경기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하였을 경우.
	2) 고의로 스코어를 조작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대회기간 중 대회 조직위원들에게 비정상적인 언동을 하여 협회의 위상 및 프로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4) 대회 기간 중 경기분과위원회의 최종 결정 및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집단 행동을 일으켜 대회운영이 파행되거나, 협회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
	5) 해외투어 참가 제한 가) KLPGA 정규투어 선수 중 정규투어와 동일한 기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해외투어의 출전은 한 시즌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단, KLPGA 메이저 대회가 해외투어와 동일한 기간에 개최될 경우, KLPGA 메이저 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나) 본 호 가목을 위반할 경우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KLPGA 공식 대회 최대 10개 대회까지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벌칙금(10만원 ~ 최대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 해외투어 풀 시드권 자는 예외로 한다. 단, 최초 발표된 KLPGA의 시즌 대회 수 기준, 정규투어 대회 30%(반올림) 이상 참가한 선수는 해당 시점부터 KLPGA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골프장에서 경기위원에게 고의로 무례한 언동을 하였을 경우.
	8) 대회결과에 불복하거나 심하게 불평함으로서 프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9) 각종 대회에 참가신청을 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무단불참하거나 출전을 기피 하였을 경우.
	10) ‘KLPGA 공인 이벤트/행사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회/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10개 대회까지 출장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벌칙금(10만원~최대 1억원)이 부과 될 수 있다. 가) 공인을 받아야 하나, 공인을 받지 않은 대회/행사 나) KLPGA가 KLPGA 회원의 참가를 불허하는 비공인 대회/행사

구분	내용
다. 교육	1) 신입정회원 입문교육에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불참하는 경우. (신입정회원 입문교육 미 이수자는 회원자격은 주어지나 입문교육 이후에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대회(투어, 시드순위전 등)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기타	1) 지정된 기간까지 벌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금 납부 시 까지 출장정지)
	2)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로 판단된 경우.

4. 자격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징계처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응할 경우 별도심의에 의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되며 회원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 중이라도 협회비와 상조회비는 계속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가. 에티켓	1) 골프장에서 프로로서의 직분을 이행치 않거나 과음 등 비신사적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나. 회원 관련	1) 고의로 협회를 비난하거나, 사사로운 파벌을 조장한 경우.
	2) 회원을 빙자하여 타인에게 고의로 경제적 손실을 입혀 물의를 야기하거나 협회 및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3) 대회출전 및 해외여행 시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4) 협회의 공식지시나 통제를 고의로 어겼을 경우.
다. 윤리 관련	1)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민, 형사상 구속, 구금 등의 실형선고를 받아 협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교통사고 제외.)
	3)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도박행위를 하였을 경우.
라. 대회	1) 각종 대회에서 참가자가 부정을 하였을 경우.
마. 기타	1)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 경우.

5. 제명.

구분	내용
가. 회원 관련	1) 회원의 품위를 심하게 실추시키거나 파렴치한 행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여 도저히 프로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회원 중 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
	3) 협회에 납부하여야 할 금원을 납부기간을 기산하여 3년간 내지 않았을 경우.
나. 윤리 관련	1)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범법행위를 하여 민, 형사상 중형선고를 받아 협회의 위신을 심하게 실추시킨 경우. (교통사고 제외.)
다. 기타	1)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된 경우.

6. 기타.

구분	내용
가.	회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대회에서 대회진행을 방해하거나, KLPGA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회원에게는 경고, 벌칙금, 출장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이 부과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대회장 출입금지, 캐디금지 등이 부과된
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 승부조작(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 경기관계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또는 투표권 구매 및 알선(경기관계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등의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②항’ 을 위반하여 동법 제47조 ~ 제 54조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재산 몰수, 자격정지등의 징벌을 받았을 시 위원회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벌칙금을 부과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출장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병행하여 부과한다.
다.	협회 공식대회 및 행사 불참할 경우 정당한 사유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국가대항전(한일전 등)에 국가대표로 선발되거나 대상시상식에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	회원이 중대한 과오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협회 및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자진하여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단, 자진신고 할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마.	상벌분과위원이 심의 및 징계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출석 상벌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이사회에 해임 또는 직무정지 안을 심의하여 상정할 수 있다. 단, 당사자는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바.	회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 회원 또는 협회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타 회원을 무고한 경우 벌칙금, 출장정지,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경중에 따라 부과한다. 단, 신고자는 피해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
사.	각종 입학비리에 연루된 경우 1) 아마추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의 입학비리가 확인된 경우, KLPGA 입회가 제한될 수 있다. 2) KLPGA 소속의 프로 또는 지도자의 입학비리가 확인된 경우 출장정지, 자격정지, 제명의 징계가 부과되며, 부가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벌칙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아.	성범죄 관련 1) 회원이 성범죄(성추행, 성폭력 등)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1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이 부과된다. 단, 300만원 이상의 벌금선고를 받거나 구속, 구금 등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제명이 부과된다. 2) 회원이 성범죄(성추행, 성폭력 등)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인지하고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자.	회원이 협회에서 부여한 회원 정보를 고의로 변경하거나 타 회원의 회원정보를 도용하였을 경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경고, 벌칙금, 출장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을 받을 수 있다.
차.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등 관련 1) KLPGA 회원 입회 시, 회원 선발전 참가 시 제출한 학교폭력 및 인권침해 등 관련

	서약서의 중요 부분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음이 회원 입회 이후 밝혀진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벌칙금, 출장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거에 발생한 학교 폭력 및 인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하여 본 협회의 회원 입회 이후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회유, 협박, 조롱 기타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벌칙금, 출장정지, 자격정지, 제명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벌칙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1. 벌칙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징계기간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2. 징계사항에 따라 벌칙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벌칙금 산정기준일은 징계처분 확정일로 한다.

제17조(절차)

1.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제15조 제5항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다. 단, 제15조 3항(출장정지)에 의거하여 1년 이상 출장정지를 의결하거나 동조 제4항(자격정지)를 의결하는 경우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의결사항의 내용과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대회 중 발생한 징계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8조(재심청구)

1.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 심의 결과의 효력은 유지된다. 단, 재심에 의하여 원 징계심의 결과가 취소되거나 양정이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 심의결과 통보일에 소급한다.

제19조(재심)

1.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재심은 최종 의사결정이다. 단, 출장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재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삼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삼심)

1. 이사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삼심 청구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2. 삼심을 요청한 징계대상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만 소명기회를 가진다.
3. 이사회는 삼심 심의결과에 대하여 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회에 반송하여 재 심의토록 한다.
4. 전 항의 경우, 위원회는 이사회의 반송취지를 재 심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용하여야 한다.
5. 이사회에서 반송되어 온 재심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이다. 단, 이사회의 반송취지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제21조(사면) 징계 해당 회원이 위원회의 결정에 순응하고, 징계규정을 준수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단, 해당자는 회원일 경우 출장정지, 자격정지, 특수관계자인 경우 캐디금지, 대회장 출입금지 등에 1년 이상의 징계와 징계 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경과기간과 상관없이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복원) 제명당한 회원은 제명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협회 회원선발전에 참가 할 수 없다.

제23조(명예회원) 40세 이상이면서 협회 입회 10년차 이상인 회원 중에서 골프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은 명예회원으로 위촉 한다. 위촉된 명예회원은 위원회의 일부 강제규정 사항이 면제 될 수 있다.

제24조(시행)

이 규정의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상(올해의 선수상)포인트 기준

구분	3억이상 - 4억미만	4억이상 - 6억미만	6억이상 - 8억미만	8억이상 - 10억미만	10억이상	메이저 대회
1위	30	40	50	60	70	70
2위	12	22	32	42	52	52
3위	9	19	29	39	49	49
4위	7	17	27	37	47	47
5위	6	16	26	36	46	46
6위	5	15	25	35	45	45
7위	4	14	24	34	44	44
8위	3	13	23	33	43	43
9위	2	12	22	32	42	42
10위	1	11	21	31	41	41

[별표2] 올해의 신인상 포인트 기준

구분	3억이상 - 4억미만	4억이상 - 6억미만	6억이상 - 8억미만	8억이상 - 10억미만	10억이상	메이저 대회
1	150	190	230	270	310	310
2	80	100	120	140	160	160
3	75	95	115	135	155	155
4	70	90	110	130	150	150
5	65	85	105	125	145	145
6	62	82	102	122	142	142
7	59	79	99	119	139	139
8	56	76	96	116	136	136
9	53	73	93	113	133	133
10	50	70	90	110	130	130
11	48	68	88	108	128	128
12	46	66	86	106	126	126
13	44	64	84	104	124	124
14	42	62	82	102	122	122
15	40	60	80	100	120	120
16	38	58	78	98	118	118
17	36	56	76	96	116	116
18	34	54	74	94	114	114
19	32	52	72	92	112	112
20	30	50	70	90	110	110
21	29	49	69	89	109	109
22	28	48	68	88	108	108
23	27	47	67	87	107	107
24	26	46	66	86	106	106
25	25	45	65	85	105	105

26	24	44	64	84	104	104
27	23	43	63	83	103	103
28	22	42	62	82	102	102
29	21	41	61	81	101	101
30	20	40	60	80	100	100
31	19	39	59	79	99	99
32	18	38	58	78	98	98
33	17	37	57	77	97	97
34	16	36	56	76	96	96
35	15	35	55	75	95	95
36	14	34	54	74	94	94
37	13	33	53	73	93	93
38	12	32	52	72	92	92
39	11	31	51	71	91	91
40	10	30	50	70	90	90
41	5	15	25	35	85	85
42	5	15	25	35	85	85
43	5	15	25	35	85	85
44	5	15	25	35	85	85
45	5	15	25	35	85	85
46	5	15	25	35	85	85
47	5	15	25	35	85	85
48	5	15	25	35	85	85
49	5	15	25	35	85	85
50	5	15	25	35	85	85
51	5	15	25	35	85	85
52	5	15	25	35	85	85
53	5	15	25	35	85	85
54	5	15	25	35	85	85
55	5	15	25	35	85	85
56	5	15	25	35	85	85
57	5	15	25	35	85	85
58	5	15	25	35	85	85
59	5	15	25	35	85	85
60	5	15	25	35	85	85

부칙

부칙(1998. 1. 1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1 개정)
이 규정은 200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 15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20 개정)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4 개정)
이 규정은 200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16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20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7 개정)
이 규정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24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17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27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22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30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1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17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17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21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4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26 정관개정)
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18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2. 20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0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2. 25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18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3. 02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4. 18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2. 23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26.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9.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7.26.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06.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26.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19.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8.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1.13.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7.06.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1.26.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9.03.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